

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80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8. 19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정이유

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중구지구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인도주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3조)

-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
-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
-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
-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다.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

라.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근거법규: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8조 및 제22조

4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현행 및 현행 권장과 관련된 사업,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을 조례안에 반영하라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, 개선안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해당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음. (여성가족과-23273호, 2021. 6. 15.)

라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: 2021. 6. 21. ~ 6. 22. / 원안가결

마. 입법예고: 2021. 6. 14. ~ 7. 5.(21일간) / 의견없음

바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·봉사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대한적십자사봉사회(이하 “봉사회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광역시중구지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
2.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
3.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
4.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보조금 지원) 구청장은 봉사회에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포상)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근거법규

□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

제8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)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,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9.>

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5. 12. 29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29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9.>

[전문개정 2012. 10. 22.]

제22조(사업 재원의 조성)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 10. 22.]

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의 육성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하여 비용추계자료 작성을 생략함.

3. 작성자

- 소 속: 복지지원과
- 직 급: 사회복지7급
- 이 름: 차영주
- 연락처: (052)290-3563